

포커스 ①

중고 수입복사기도 전기제품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광학기기협회, 개정안 관련 기술표준원에 의견서 제출



앞으로 중고 복사기 수입업자들도 내년부터는 합법적으로 중고복사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일제단속 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중고 수입복사업체들은 합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복사기업체들은 이번 법개정이 중고제품 수입을 양성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에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광학기기협회는 현행 안전인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 향후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리 | 편집부 |



이미 수차례 본 지를 통해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광학기기협회와 복사기 3사는 중고 수입복사기의 영업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복사기의 근절을 위해 관세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는 등(최근 관련기사 본지 2004년 3월호 40~43P, 5월호 64~65P) 다각도로 활동한 가운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기술표준원은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중고 복사기 수입업체들도 내년 7월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뒤 합법적으로 중고복사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복사기 수는 총 2만 6,149대(109업체)로 이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복사기는 약 2만 1,192대(60업체)로 추산된다. 한편 이러한 법개정에 대해서 그동안 일제단속 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중고 수입복사기업체들은 합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이다. 반면 한국광학기기협회와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롯데

캐논 등 복사기 3사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중고제품 수입을 양성화하여 중고복사기 수입을 더욱 증대시키고 소비자 피해 또한 늘어날 가능성을 들며 우려의 빛을 나타내고 있다.

“중고제품 수입 양성화한 법개정 통해 중고복사기 수입 증대 및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롯데캐논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 복사기제조기업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 24일 기술표준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불법 반입 중고 복사기 수입방지 및 검사 강화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대상에 수입 판매업자를 추가할 것과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해 수입업자·판매자 또는 대여업자가 안전검사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체들은 먼저 사실상 수입규제로 되어있는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중고전기용품의 경우 신제품과 달리 품질과 안전성 등이 매우 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인 점을 들어 전기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감전,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A/S 등 보상체계가 허술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기준은 신제품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되, 안전검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검사 통과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예를 들어 성실업체와 비성실업체 등과 같이 구분하여 간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은 수입중고전기용품의 경우,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규정이 없어 신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장심사에 부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취소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유통되고 있는 안전검

사대상 수입중고전기용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공장심사)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밖에 전기용품의 파기·수거명령, 과태료부과·징수 및 보고·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현재 행정처분이 시도지사에게서 각 구청으로까지 권한 이양되어 행하여지나 실제 처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제품이 재 유통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조항중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를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한다”로, “파기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를 “파기 또는 수거하게 한다”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한다”로 강력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고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대여하는 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행위도 유통의 한 형태이므로 사후관리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은 수입중고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수입업자, 판매자, 또는 대여업자가 안전검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